충청남도 공고 제2021-1834호

도 「단계적 일상회복」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 공고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체계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1. 12. 4.

충청남도지사

1 처분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- (벌칙·과태료·행정처분)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
[감염병예방법]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[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]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(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등 행정처분 실시)과 같다.

2 처분 사항

□ 기 간 : 2021. 12. 6.(월) 0시 ~ 2022. 1. 2.(일) 24시 / 4주간

□ 대 상 :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

*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

□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

□ 분야별 방역기준 (수칙 요약표)

○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의 각 시설별 '의무화 조치' 적용

< * 접종 완료자 등 >

❖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(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)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▸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여부 구분 없음) <적 용 제 외> ❶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 ❷ 아동(만 12세 이하)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❻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(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) 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 ▸ (식당·카페) 8명(미접종자 1명+접종완료자 7명)까지 모임 가능 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)
행사·집회	▸ 100인 이상 행사·집회 금지 (접종여부 구분 없음) ▸ 500명 미만 행사·집회 가능 (접종 완료자 등*만 구성 시)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1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	
▪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**▪ 콜라텍,무도장**	▸ **24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** ▸ 접종완료자, 완치자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 ▸ (콜라텍·무도장)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(코인)연습장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체육시설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목욕장업 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▪ 카지노(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) **▪ 경륜·경정·경마장**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식당・카페 (일반, 휴게 제과, 호텔뷔페 등)	▸ **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학원 등 (교습소, 직업훈련기관)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영화관·공연장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독서실, 스터디카페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▸ 지정구역(푸드존 등)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멀티방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PC방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▸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실내 스포츠경기(관람)장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▸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파티룸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도서관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시설 내 식당·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마사지업소·안마소	▸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계도기간(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※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) 12.6. 0시 ~ 12.12. 24시까지**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2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	
결혼식장, 돌잔치, 장례식장	▸ **(이용 가능 대상)** -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- (결혼식) 미접종자 49명+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▸ **(밀집도) 시설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**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▸ **수용인원의 50%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
오락실	▸ **시설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상점, 마트, 백화점 (300㎡ 이상)	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대상, 준대규모점포는 권고·전통시장 제외) ▸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
실외 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▸ **수용인원의 50%**(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,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%까지 입장 가능)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, 취식 가능
실외체육시설	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숙박시설	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* 주최 자제 권고 *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키즈카페	▸ **시설 면적 4㎡당 1명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전시회·박람회	▸ **최대 99인까지**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) **가능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전시장 외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이·미용업	▸ **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국제회의· 학술행사	▸ **최대 99인까지**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) **가능** ▸ **좌석 한 칸 띄우기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▸ **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종교시설	▸ **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%** ▸ **종교행사 최대 99인까지**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) **가능** ▸ **(소모임·성가대)** 접종완료자로만* 구성 시 운영가능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 - 소모임은 12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요양병원 요양시설	▸ **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**
사회복지시설	▸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대중교통	▸ 마스크 착용 ▸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
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	▸ 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▸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만원) ※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

3 기타 사항

1. 처분사유 :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·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
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, 손실보상금·재난지원금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참고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▣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7601(2021.5.28.), 18516(2021.6.11.), 18531(2021.6.11.)」에 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 (대상) 아래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*

■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*: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,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**입장(이용)시** ▲**접종완료자**와 ▲**PCR음성확인자***, ▲**예외자****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

* 접종완료자,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** 18세 이하인 자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,

※ **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.2.1.(화)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~11세 이하로 조정**

※ **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, 인·허가 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(종) 및 기타 미인가·미등록·무허가 시설의 경우,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**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>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6종)
<기존시설> ▲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▲노래(코인)연습장 ▲실내체육시설 ▲목욕장업 ▲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<추가시설> ▲식당·카페 ▲학원 등 ▲영화관·공연장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멀티방 ▲PC방 ▲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파티룸 ▲도서관 ▲마사지업소·안마소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4종)
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오락실 ▲상점·마트·백화점(각 300㎡ 이상) ▲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 ▲실외체육시설 ▲숙박시설 ▲키즈카페 ▲돌잔치 ▲전시회·박람회 ▲이·미용업 ▲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
※ **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**는 **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**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**선택하여 적용** 가능(**혼합적용 불가**)

2 적용 기간

<경과규정 등>
-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**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(12.6.~12.12.) 부여**
-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(**18세 이하인 자 → 0~11세 이하인 자**) 조치는 **2022.2.1.(화) 0시부터 적용**

○ **2021년 12월 6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 까지**

3 방역 수칙

○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**【별첨】의 방역수칙을 적용**

○ **'콜센터', '물류센터'**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**의무사항**임

<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>

★ 준수 의무사항	
▲콜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	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▲ 물류센터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○ 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4 법적 근거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2호, 같은 조 제2의2호,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' 방역지침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**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, **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**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⇩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**으로 확진자 발생 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		운영중단	운영중단	운영중단	폐쇄명령
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10일	20일	3개월	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		운영중단	운영중단	운영중단	폐쇄명령
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10일	20일	3개월	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**방역수칙을 모두 준수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(또는 고발조치) 부과 → **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**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
-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2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▣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7601(2021.5.28.), 18516(2021.6.11.), 18531(2021.6.11.)」에 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 적용 대상 등

❶ 사적 모임 제한(수도권 외 지역 8명까지 가능)

○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○ (제한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○ (인원산정) '8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<사적 모임 적용 예외>

○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
- 동거가족 모임
 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❷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○ **동일 목적**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장소**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인** 집합·모임·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

- **(1명~99명)**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**99명까지** 모임·행사가능
- **(100명~499명)** 모임·행사 **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**하여야 모임·행사 가능

☞ **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·행사의 경우,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'전원'(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 일 것)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,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* 외 참여 금지 조치 必**

* ▲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▲PCR 음성확인서 소지자, ▲18세 이하인 자(2022.2.1. 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▲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→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- **(결혼식(장) 등) 결혼식장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**는 위 인원제한(1~499명)을 동일 적용하되,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**(혼합적용 불가)**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(수도권: 6명/수도권 외 8명)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,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< 적용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/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>

▲**(모임·행사예시)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**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▲**(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)**

- **(결혼식장취식O) 최대 250명 가능(미접종자 49명+ 접종완료자 201명)**
- **(전시회·박람회)** 6㎡당 1명,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
- **(국제회의·학술행사)** 좌석 두 칸 띄어 앉기(밀집도 제한 내 참석자 접종여부 무관)

- **(집회·시위) 인원제한*은 집합·모임·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**

  *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(예정) 인원(수)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

- **(500명 이상*)**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**5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**하되, **①비정규 공연시설**에서 진행하는 **공연**, **②각종 스포츠 대회** 및 **③(지역)축제**에 한해 **관할 부처·지자체**의 **사전 승인** 후 가능

  *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

○ 집합·모임·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

- **(1명~99명) 모임·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**으로 하되, **참석자 전원**을 **접종완료자 등**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**'식당' 방역수칙을 준수**하여 취식 가능

- **(100명~499명)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** 모임·행사 중 **'식당' 방역수칙을 준수**하여 취식 가능
- **(500명 이상)**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·행사에서 취식은 **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**
- **(500명 이상)**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·행사에서 취식은 **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**

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○ **법령 등에 근거**한 활동으로, **일정 인원 이상**이 **대면**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**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** 등 행정·공공기관의 **공적 업무수행*** 및 **기업의 경영활동***에 **필수적**인 **모임·행사**는 인원 제한 없이 **허용**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❹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
2 적용 기간

❶ 사적모임 제한: 2021년 12월 6일(월) 0시 ~ 2022년 1월 2일(일) 24시

❷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: 2021년 12월 6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3 법적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같은 조 제2의2호,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4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① **(중대본)**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**(지자체)**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⇩

③ **(지자체)**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게 **과태료 부과**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*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 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
⇩

④ **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** 위반 시 **고발조치**, 확진자 발생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**9명**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	▸ **9명**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**9명**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② 시설 내 이용객이 **9명**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**9명**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

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**9명**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※ **식당·카페에 한해**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

◦ (전국) **접종미완료자*로만 최대 1명**까지 이용 가능

* **PCR음성확인, 연령상 예외 등(18세 이하<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>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)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**

◦ 관리자·운영자는 식당·카페에서 **2명**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**1명을 초과**하는지 확인하고,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예시) 식당·카페 이용 예시	
수도권	**수도권 외 지역**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5명 ⇒ 6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7명 ⇒ 8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0명 ⇒ 1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0명 ⇒ 1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+완료자 6명 ⇒ 6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+완료자 8명 ⇒ 8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+완료자 4명 ⇒ 6명(X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+완료자 5명 ⇒ 8명(X)

○ **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**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 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 시 **과태료 부과** 또는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→ **벌칙 부과** 등 조치

① 관내 **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② 해당 모임·행사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5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① **(중대본)**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자(관리자 및 운영자)와 참가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)

⇩

② **(지자체)** 관내 **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** 행정조치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**(지자체)**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·운영자·참석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⇩

④ **(지자체)**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**으로 확진자 발생 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명 이상 모이는 **집합·모임·행사**를 개최하는 경우 **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**

<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수칙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▸ **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**	
◦ **100명 이상** 모이는 모임·행사의 경우, 주최자 등 **참석자 전원** 접종완료 등 확인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확인 등 협조

※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일 것 - **(접종완료자)**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, 완치자 포함 - **(미완료자, 예외자)**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	
*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**	
▸ **출입자 명부 관리**	
◦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
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	
◦ 다중이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의 경우,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	◦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▸ 기타(권고사항)	
◦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◦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	-
※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, ③ (지역)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	

<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수칙 해석사항>

□ **(주요 내용)**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,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행사는 **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가능**하도록 정비

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(48시간 이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
◉ **(행사)** ①**단체·법인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**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 등

○ **(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)** ②**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**

- **동일 목적**을 가진 사람들이 ③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장소**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인** 집합·모임·행사

□ **이와 관련, 기 안내 드린 '행사'의 주최자·목적·형식에 대한 구분사항은,**

▪ ①**공공기관·법인·기업 등 주최단체**가 **법정단체,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,**
②**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** 주최단체의 **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**이며,
②**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**되는 등 **형식적 요건**을 갖춘 경우

□ **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,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임**

- **다만,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,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 하 예외적으로 가능함.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**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** 등 조치 → **벌칙 부과** 등 조치

① 관내 **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② 해당 모임·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 또는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□ **(대상)**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**운송수단**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※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

○ **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**방역지침을 모두 준수**

이용자 수칙
▸ 마스크 착용 ▸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참고4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시행

□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방식

①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

대상자	발급방법(시행일시)	확인방식
접종완료자	**1) 전자증명서**(시행 중) * COOV, 네이버, 카카오톡 등 **2) 종이증명서**(시행 중) (예방접종증명서, 동사무소) **3) 예방접종스티커**(시행 중)	**1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** *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**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**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**3)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**
PCR 음성 확인자 (보건소 발부)	**1) PCR 음성 결과통지서** **1-1) 문자 통지서**('21.11.1~) **1-2) 종이증명서***('21.11.1~) (PCR 음성 확인서) **2) 전자증명서**('21.12월말~)	**1-1) 문자 통지서**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**1-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**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**2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**
확진 후 격리해제자 (이하 완치자)	**1) 종이증명서**(시행 중) (격리해제확인서) **2) 전자증명서**('21.12월말~)	**1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**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**2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** *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
예외자* (의학적 사유)	**1) 종이증명서**('21.11.1~)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) **2) 전자증명서**('21.11월 말~) *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	

*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**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12월말부터 가능**

**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(본인 신분증으로 증명)

②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

구 분	접종완료자 (완치자 포함)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		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그 외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	○	○	○	○
	○	○	○	○
	○	○	○	○
	○	○	○	○